

서울고등법원 2020. 2. 6 선고 2019나2037395(본소), 2019나2037418(반소) 판결

[정산금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

담당변호사 김인욱, 송윤정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

변론 종결 2020. 1. 16.

판결 선고 2020. 2. 6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합529603(본소), 2018

가합57350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 한다)에게 1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2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8. 30.부터 2018.10. 2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: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나. 피고: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 하는 내용까지 보태어보면,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.

『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건대, 설령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을 "피고가 원고에게 '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반환금'을 고려하지 않고 향후 8억 원을 반환하겠다"는 의미로 보더라도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(정산금)이 남아 있다거나(본소청구 부분),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(반소청구 부분) 단정하기 어렵다.

1)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'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년 지급금'은 원고가 피고에 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하던 N의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서, 이는 이 사건 사업에

관한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① N은 2005. 8. 5.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, 2006.

1. 작성된 이 사건 추가약정서(갑 제11호증)에는 "원 · 피고는 2005. 8.5. N의 지분 1/3 중 300,000,000/787,477,000 지분을 각 1/2씩 매수하였다"고 기재되어있고, 원고는 2005. 8. 5. 위 매수대금 등으로 175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 즉, 위 추가약정서 작성 당시 N의 지분 중 487,477,000/787,477,000 지분은 아직 그 매수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.

② 이 사건 동업약정서(갑 제1호증의 1)의 1항 밑에는 수기로 2007. 1. 25.자로작성된 1-2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"원 · 피고는 N의 지분 전부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1/2씩 부담 · 지급정산하였다"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원 · 피고의 서명날인이 추가되어 있다. '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년 지급금'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7. 1. 11. 1억 원, 2007. 1. 23. 1억 5,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인데,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. 8. 5. N의 지분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한 나머지인 487,477,000/787,477,000 지분에 대한 금액 중 원 · 피고의 부담비율인 1/2에 해당하는 금액($487,477,000 \text{원} \times 1/2 = 243,738,500 \text{원}$)과 금액이 비슷하다. N 역시 2005. 8.경 및 2007. 1. 경 두차례에 걸쳐 원 ·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정산받았다는 취지로 인증서(을 제23호증)를 작성하였다.

2) 이와 같이 '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년 지급금'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, 원고의 주장대로 '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반환금'이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, 위 2007년 지급금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것이라고 볼 수 없다. 그렇다면 '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년 반환금'은 그 성격이 '투자에 대한 정산금 일부(피고의 주장)'이든 '원고의 차용금(원고의 주장)'이든 간에,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줄 돈에서 제외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.

3)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4. 8. 29.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의 정산으로써 최종적으로 3억 6,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, 그 과정에서 이 사건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해두었던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해주었다. 이는 원 · 피고 사이에서 위 돈의 지급으로 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

것으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3억 6,000만 원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해주어야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정산받지 못하게 됨에도 전부 말소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) 한편, 원고가 2015. 3.경 피고에게 2004. 6. 5.자 동업예약서(갑 제17호증)에 쌍방이 통정하여 허위로 기재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, 피고는 원고에게 "2014. 8. 28.1) 마지막으로 모두 변제하였다"는 취지로 더 줄 것이 없다며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서 항의하였고, 이에 원고는 이를 납득하고 그대로 수용하며 사과했던 것으로 보인다. 이 역시 피고가 2014. 8.29.경 원고에게 3억 6,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 ·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투자금의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.』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.
재판장 판사 김재호, 판사 이 혁, 판사 곽윤경

1) 이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3억 6,000만 원을 지급했던 '2014. 8. 29.'의 오기로 보인다.